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1229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김은표

변론 종결 2021. 5. 27.

판결 선고 2021. 6. 1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6,333,548원 및 그 중 55,875,611원에 대하여 2020. 4. 13.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63,069,2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63,069,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7. 2. 9. 'C'라는 상호로 절삭가공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A과 보증금액 61,200,000원, 보증기간 2018. 2. 8.(그 후 보증기간이 2020. 2. 7.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달 10.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 명목으로 7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피고 A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폐업을 하였을 때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사전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약정되어 있다(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피고 A은 자금 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해 오다가 2020. 1. 8.부터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31. 폐업하였다.

3)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20. 4. 13. 기업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55,875,6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는 그 대위변제금과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 행사에 든 비용(법적절차비용), 위약금, 대위변제 수수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20. 11. 12. 현재 발생한 위 구상금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역	대위변제금	법적절차비용	위약금	지연손해금
금액	55,875,611원	300,517원	157,420원	3,398,461원
합계	56,333,548원			3,398,461원

나. 이 사건 처분행위

- 1) 피고 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위 'C' 운영을 위한 공장 등 영업재산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7. 피고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4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매매계약 당일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사실조회 결과,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법적 절차비용, 위약금등 합계 56,333,54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5,875,611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20.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8. 20.까지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이 원칙이나 그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8. 27.에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채무자인 피고 A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못해 2차례에 걸쳐 변제기를 연장해 오다가 자신의 영업재산 전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0. 1. 8.부터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였으며, 이어서 곧바로 같은 달 31. 폐업에 이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 구상금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 등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전 구상금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위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 A이 위와 같이 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남편인 E이 피고 A에 대한 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위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존재나 원고와의 신용보증계약을 알지 못한 채 피고 A의 공장 매수 제의를 받고 시세에 적정한 가격인 350,000,000원에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사해의사란 일반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특정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그런데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A이 자금 사정으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내놓았으나 1년이 넘게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위 부동산의 피고 A이 운영하는 C의 영업자산 전부인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처분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자료에 의해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달리 피고 D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그리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동담보로 제공되던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18,115,8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에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276,569,441원(피담보채무액 331,819,441원 중 원고의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우선 담보되는 55,250,000원은 위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이다)을공제한 141,546,539원이다(시가감정결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41,546,539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56,333,548원과 그 중 55,875,611원에 대하여 2020. 4. 13.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5. 27.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735,690원 $[(55,875,611\text{원} \times 8\% \times 130/365) + (55,875,611\text{원} \times 12\% \times 280/365)]$ 을 합한
63,069,238원 중 적은 금액인 63,069,2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63,069,2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엽